제323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정례회)
제 1 차 도 시 교 통 위 원 회

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.

도시교통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

○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(안 제3조제2항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제3항, 제4조제2호)

○ 서면심의 근거 신설(안 제6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기간 : 2026. 8. 13. ~ 2026. 9. 2.(20일간)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❍ 주요 내용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8조의 2 조문에 부위원장을 “과장급”에서 “과장급 이상”으로 개정(‘24. 9. 19.)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였고, 지명위원회 회의 시 긴급 및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❍ 지명위원회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위원회로서 위원들이 직접 출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해당 조례에 천재지변, 긴급성,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심의・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서 허용하고 있기에 금번 개정안은 입법례의 어긋나지 않으며, 최근 5년간 지명위원회 운영 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운영 현황(최근 5년간)

연도별	운영 현황	내 용	비 고
2022년	1회 운영	별내선 복선전철 남양주시 구간(BN5)역명 **(제정:다산역)**	**제안부서 철도교통과**
2023년	미개최	-	
2024년	미개최	-	
2025년	미개최	-	
2026년	1회 운영	관내도로시설물(중촌1・2지하차도) 지명 **(제정:중촌지하차도)**	**제안부서 도로시설관리과**

3) 위원회의 운영

가) 출석 회의의 원칙

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급적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되, 그 사유는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.[64]

나)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

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중요한 규정은 회의의 소집권자 및 절차와 회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다.

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, 행정기관의 장이나 일정한

63) 기존의 입법례에는 "… 회무를 통할한다", "… 직무를 통할한다", "… 업무를 통리한다"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다.

64)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, 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,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붙임1 **관계법령**

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

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, 2020.2.18 제17063호(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), 2022.6.10] [[시행일 2023.6.11]]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 [개정 2022.6.10] [[시행일 2023.6.11]]

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[신설 2019.12.10, 2022.6.10] [[시행일 2023.6.11]]

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개정 2019.12.10, 2022.6.10] [[시행일 2023.6.11]]

[본조제목개정 2022.6.10] [[시행일 2023.6.11]]

제91조의2(지명의 결정)

①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고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지명을 결정(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·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·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2.6.10] [[시행일 2023.6.11]]

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
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개정 2024.9.19] [[시행일 2024.9.20]]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
3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
[본조신설 2023.6.9] [[시행일 2023.6.11]]

붙임2 **비용추계**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「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「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에 부합하도록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,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도시국 토지정보과장 진상범